제883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 위·수탁 관련 내부통제기준(신설) ○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ㆍ수탁하는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도록 의무 부과 * 주가ㆍ주가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만 판매업무 위ㆍ수탁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판매하는 수탁사가 확인, 위ㆍ수탁사가 판매관련 손해배상책임을 연대 ▶ 금융투자업규정 제2-24조 2. 기업공개(IPO)시 주관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(신설) ○ 주관회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 ▶ 금융투자업규정 제4-19조	1.비중요 2.비중요
2	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(강화) ○ 러시아,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기존의 57개에 더하여 741개를 추가함으로써 총 798개로 확대 ○ 향후 798개에 해당하는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산업부 등 허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▶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내압용기의 시험방법 및 절차 변경(강화) ㅇ LPG 내압용기 설계단계검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일반적인 용기의 기준(KGS AC-211)과 조화하여 검사기준 및 항목을 변경 ▶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3조	1.비중요
4	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 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(신설) ㅇ (기록) 피폭방사선량 조사·분석 결과(매월 경과 후 3개월 이내), 안전조치, 건강진단, 교육(실시한 때) ㅇ (보관) 승무원이 75세가 된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일로부터 30년이 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ㅇ (보고) 피폭방사선량 조사·분석, 안전조치 결과(매분기 후 3개월 이내), 건강진단·교육(해당 분기 후 1개월 이내) ▶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	1.비중요
5	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원자력안전위원회)	1.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강화(강화) ㅇ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 구체화 ㅇ 국제항공노선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ㅇ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원안위의 정기검사 주기, 항목에 관한 사항 규정 ▶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4조의2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 공휴일 중 부처님오신날,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(강화) ○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(음력 4월8일), 기독탄신일(12월25일)까지 확대하여 시행(공포 후 즉시 시행) ▶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	1.비중요
7	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화장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(강화) ○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에 대한 화장실(대변기) 설치·이용 조치 기준으로 '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,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' 을 추가 규정 * 여성의 경우 남성의 1.5배로 기준 설정 ▶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	1.비중요
8	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6) 개정안 (소방청)	1.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6) 전부개정(강화) ○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하고,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배치 ○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각 층에 설치하고,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비상전원을 포함하여 설치하며 설치 위치 표시와 그 작동 방법을 규정	1.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ㅇ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에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ㅇ 간이피난유도선에는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ㅇ 비상조명등은 화재로 인한 정전시 건설현장 내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 ㅇ 방화포는 건설현장에서 용접·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비산되는 불티 등이 작업반경 10 m 이내에 있는 가연물에 영향을 미치지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며,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그 성능을 확보 ▶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(NFSC 606)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	